

第244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2月22日(月)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審査된案件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1

(17시53분 개의)

○위원장 **목요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7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위원장 **목요상**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안협의의견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개특 일정에 따라 오늘 2시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의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구획정위원장님이 사퇴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님이 말려서 사퇴가 보류되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늦어도 23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수, 인구상하한 그리고 선거구 인구획정 시점 그리고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하는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24일부터는 사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金學元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

니 이틀만 참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사퇴하고 위원을 다시 선임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금년 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위헌사태가 생기고 위원님들의 지역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본회의에서 12월 31일까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내일 양일간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4가지 안은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金成基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는 참 점잖으셔서 그런 말씀을 좀처럼 안 하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11시 30분에 정개특위 4당 간사님들이 회동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권한 부분에 관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기로 합의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오늘 본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인 李敬在 위원으로부터 심사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李敬在 위원입니다.

선거법소위에서 지난 19일 합의 발표한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보고드립니다.

제134조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의 당초 합의 내용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일 전 180일 이후 거래내역에 대하여 통장원부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다음 제134조 벌칙과 관련하여 선거비용 관련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이 헌법상 자기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역시 이것은 과태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 말하자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의견에 동의하되 다만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과 동행요구권 및 출석요구권이 당초 합의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법에도 동행요구에 관해서는 임의동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동행을 요구한 것처럼, 그것을 삭제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현행법에 관해서도 그것은 일반인이나 누구나 언제든지 동행요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특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선관위에서 현행법에 대해서 동행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명문화해 달라고 해서 현행범인 경우에는 동행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것으로 했고 출석요구권은 현재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제272조의2 선거범죄조사권, 당초 합의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현행범인 경우에는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와 출석요구는 현행대로 100만 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써놓았기 때

문에 중복된 감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또 직권남용죄는 당초에는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직권남용죄를 신설하건 안 하건 지금 형사소송법상 이것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을 일부러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답례와 관련하여 행위 시의 공소시효는 행위 시부터 6개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위 시에 대해 언제까지나 하는 것이 특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거 후 답례는 3개월 이내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두면 최대 9개월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특정한 직권남용죄다 또는 동행요구권 삭제다,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 다른 법에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이지 일부러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하셨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와 현행범의 동행요구인 경우, 또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전체 다 100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 동행요구 위반한 것만 300만 원이고 출석요구 위반한 것은 100만 원으로 이렇게 각각 정한 것인가요?

○**小委員長 李敬在**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金學元 委員**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만 원으로 다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되었는데 그것을 쪼개서 어떤 것은 300만 원 이하, 어떤 것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통일해야지 굳이 쪼개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小委員長 李敬在**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소위원장님의 경과보고를 들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하시지요.

威承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威承熙 委員** 저는 지난번에 법사위 의결 문제

때문에 합의할 때 참석을 못 해서 뒤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권한과 경찰·검찰의 권한을 선거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사후 처벌의 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라는 것은 예방 내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억제, 방지에 더 역점이 주어져야지요. 선거 끝난 다음에 고발한다면 우선 그 지역의 인심이 아주 사나워집니다. 선거 후유증이 심각해지지요. 또 거기에다 재선거라든가 보궐선거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국고낭비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선거를 못 하게 하고, 하고 있을 때는 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억제하고 경고함으로써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경찰이나 검찰은 할 수 없지요. 지금 어떤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향응이 진행되고 있고 비방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때 검찰에 전화해서 지금 이런 행위가 진행되는데 ‘와서 단속해 주시오’, 검찰이 합니까? 검찰은 ‘고발하십시오’ 그러지요. 현장 단속은 안 하지요. 현장 단속은 누가 하느냐, 선관위에서 하지요.

선관위는 적어도 수사기관은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범죄를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억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에 대한 권능은 최소한 어떤 기관과도 중첩되지 않는 선관위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현장에서 향응이 오고가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 증거물에 대한 수거권이라든가 비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비방하는 전단이나 또는 플래카드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한다든가 이런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그런 것을 합디까? 고발하라고 하지 경찰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의 모든 권한은 선관위한테 다 주어 야 된다, 사후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경찰·검찰이 한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적시된 합의사항 중에서도 자료제출요구권이라든가 증거물품수거권을 선관위가 안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소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습

니다.

오히려 선관위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개특에서 그런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어서 선관위가 직권남용할 일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불리해지는 것입니까?

저는 왜 그것을 동의 안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범죄로 인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자가 신분을 잃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나요?

이 중에 중요 범죄는 최소한 벌금규정이라도 두어서 위반했을 때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상응하는 효과를 주어야지 과태료 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태료가 신분과 관계 없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과태료 무서워서 할 짓을 안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최소한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억제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처벌규정을 둔다면 벌금규정을 두어야지 과태료 규정을 둔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과태료 겁나서 안 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이것은 이치에 안 닿습니다. 왜 이것이 과태료입니까? 벌금이지……

선관위 의사가 어떠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잘 알겠습니다.

신기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기남 **위원** 지금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표결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목요상**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하세요.

○신기남 **위원** 무엇에 대해서요?

○위원장 **목요상** 소위원장이 아까 보고한……

○신기남 **위원**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목요상**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신기남 **위원** 저는 威承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애초에 헌법상 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여기를 통해서 공명선거를 이루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은 늘 주장해 왔습니다.

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부정선거를 막으면 좋은 것이지 그것이 어째서 나쁜 것입니까? 선관위가 하는 일에 있어서 권한 남용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욱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면 했지 어떻게 선관위를 의심한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선관위의 항의를 받고 3당에서 조금 완화된 것은 다행입니다. 만지지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흡합니다.

오늘 조금 수정한 것은 무엇이나 하면 기존의 현행 법에도 있는 조항인 제134조, 그리고 제272조의2 이 내용을 3당이 합의해 가지고 완화시키거나 삭제되었던 것들, 선관위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기존에 있던 것을 일부 환원한 것에 불과하지 애초에 범개협에서 주장했던 내용, 선관위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서 공명선거를 기하자는 그런 내용을 저희 열린우리당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했었는데 3당이 그것을 전혀 묵살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선관위의 권한은, 기존에 있는 조항은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범개협에서 주장하는 강화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나 선관위의 수사권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능이 있으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헌법기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는 없지요. 그것은 체계상 안 맞습니다.

선관위는 조사권능에 머물러야 돼요. 수사권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개협안 중에서 수사권능에 해당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된 후에 범죄로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예방, 단속, 중지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조사권능을 주는 것은 선관위 고유기능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朴요상**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鈞 委員** 어떤 중요한 법이든 간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죄란 “내가 죄가 있습니다. 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자유사회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도 어떤 선거범죄 혐의가 있어서 특정인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뿐만 아니라 검사나 경찰관이 문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

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징역이나 벌금으로 다스리는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검사가 불러서 진술하라고 했을 때 진술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징역 2년에 처한다, 이런 법률은 원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제137조, 제272조의2가 위헌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우리의 형제자매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공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온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범죄시해 가지고 “이리 오너라” 해서 바로 안 나오면 징역 2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규정을 이번에 고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거비용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선거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2년,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징역이나 벌금을 이런 식으로 가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들은 이런 해괴한 규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단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수행권을 최고로 보장한다고 해도 과태료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고 선관위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권에 있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정상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관공서를 속이는 일이니 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임의동행이라든지 출석요구 문제에 있어서는,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원래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임의로 검찰에 갑시다. 경찰에 갑시다” 했을 때 따라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영장을 받아오든지 그대로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유독 선관위에서 “임의동행합시다” 했을 때 안 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 처분한다는 것은 자유사회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범의 경우에만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했을 때 과태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권은 일단 인정하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출석과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특권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징역이나 벌금으로써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강제한다는 것은 자기부죄의 금지라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데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가권력이 얼마나 남용되기 쉬운 것이며 또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그러한 국가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참하게 침해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90% 이상의 직원들은 선량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혹 그 중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규모로 동행명령을 한다든지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대규모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를 제가 당의 법률지원단장을 하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어서 너무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學元** **위원** 선관위원들에게 선거범죄를 예방하도록 권한을 주고 또 선거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도 다른 법과 헌법상의 원리 그리고 신체에 관한 원칙이 서로 조화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는 아시다시피 위태범입니다. 실제로 방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법에 의해서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구태여 특별규정을 두어서 징역 1년 이하로 형을 내

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선거범죄의 혐의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것도 징역 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내려놨어요. 왜 이렇게 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특별규정을 두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를 불응할 때 처벌하는 것도 아까 자기부죄금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신체의 자유라든지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압수수색한다든지 또 출석을 강제시키려면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출석을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를 불응했다고 해서 징역형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론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범으로 처벌되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법 전체적으로 보면 다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요구라든지 출석요구한 것에 대해서 불응한 것은 과태료로 하는 것이 법이론상 맞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하되 법이론은 법이론대로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료를 강제로 뺏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출석을 강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법관의 영장을 얻어서 자료를 압수하고 법관의 영장을 얻어서 강제로 연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체계에 맞도록 하고 형도 공무집행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되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서 정해서 형을 내려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가, 직권남용죄를 삭제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직권남용죄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법을 정리해서 체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목요상** 강봉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봉균** **위원** 저는 선거법소위에 그동안 참여했는데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위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분위기와 기본적으로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공정한 선거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선거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위원님 말씀을 들으시고 대개 판단이 가셨겠지만 첫째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면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굉장한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느냐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던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金學元 委員** 자민련은 넣지 말아요. 강화하자는 입장인데 왜 자민련을 자꾸 넣어 가지고……

○**강봉균 위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민련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선거범죄를 선거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뜻은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나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자는 것인데 일반 형법에 있는 것을 왜 선거법에 넣느냐는 식의 논리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죄 같은 것은 형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도 직권을 남용하면 벌을 받는데 왜 여기에다가, 처음에 합의할 때 직권남용죄를 넣자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 이런 조항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넣으면 선거관리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진일보되고 보다 강화된 선거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주문이라면 그동안 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약화시키는 것은 여러 번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威承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威承熙 委員** 논리적으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것보다는 원칙에 안 맞으면 요구가 아무리 강해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리이러한 행위에 대한 범죄가 형법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같은 것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공무원들의 실효성 있는 공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와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같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일반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법 위반이 되어서 선거법 위반행위와는 기본적으로 신분에 차이가 있어요. 선거법 위반은 현행 체제로도 벌금 100만 원인가 얼마면 신분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것과 뒤늦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되는 것이 같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하는 자 또는 모든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자한테 가장 무서운 것은 위반행위를 하면 나중에 신분을 잃고 패가망신한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선거법에 두어야지 일반 형법에 두어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형법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법은 처벌보다는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강조되는 법이기 때문에 형법에 있다고 해서 선거법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을 신청할 재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권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요구라든가 현장에서 증거물품 수거라든가 하는 권한은 당연히 주어져 되고 거기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야 실효성 있는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과태료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든다면 두나마나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나마 헌법상 기관은 선관위 아닙니까?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 선관위입니다.

검찰, 경찰보다 선관위를 더 못 믿겠다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지요. 16대 국회 시작하고 3년

내내 문제된 것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시비 아니었습니까?

선관위에서 실사 다소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선관위가 편파적이었다는 시비는 지난 16대 총선 끝나고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왜, 선관위를 못 믿고 누구를 믿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제 이야기가 호도되어 가지고 자꾸 빗나가고 있는데 저는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1년 이하 징역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형법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왜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형을 1년 이하로 내리느냐는 것입니다.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왜 경하게 내리느냐는 것이지요.

아까 선거법의 신분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하더라도 집행유예까지 받으면 자격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형을 맞춘다면 형법상의 형을 맞추면 몰라도 5년이던 것을 왜 1년으로 끌어내리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현행법으로 하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경하게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를 5년으로 맞추려면 맞춰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형법상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선관위에서 1년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좋다, 1년 이하로 해라 하고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하는 것에 동의는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체계상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법률 체계상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이지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 소위원회 할 적에도 권한 강화는 꼭 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지만 선관위 안을 자꾸 삭제하자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목요상** 전재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재희 위원**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선거를 치를 때 상대후보가 불

법선거를 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면 지체 없이 출동해야 그 현장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그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기 때문에 답답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의 때 이 부분을 합의할 때는 제가 다른 일로 자리에 없었는데 앞부분에 조를 짤 때 각 조마다 각 당에 추천한 감시인이 들어가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러 누장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누장대응을 해서 불법현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현행 규정을 고치려고 하면 현행 규정을 고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규정을 집행해 보니까 이러한 물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면 별 무리 없이 합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제한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진지하게 듣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안 중에 선거 후 답례는 3개월 이내 금지한다고 하셨습니다?

○**小委員長 李敬在** 예.

○**전재희 위원** 현행 법은 6개월 아닙니까?

○**小委員長 李敬在**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행위 시로부터 6개월이면 오히려 9개월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재희 위원** 이것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小委員長 李敬在** 그럼요.

○**전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드나 해서 그것을 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 규정을 고칠 때는 현행 규정을 집행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100% 믿는다는 것도 난센스고 100% 안 믿는다는 것도 난센스고, 또 선관위 직원이라고 전부 천사만 계신 것도 아니고 훌륭한 공무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선관위 직원도 자기 직무를 해태하는 직원이 있고 자기 직무를 잘 못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대체로 잘 한다 이랬기 때문에 피해를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으면 그것을 매도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사실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 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던 것인데 본격적으로 소위 심사결과는 아예 무시된 채 원론부터 자꾸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되풀이하게 되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요.

아까 신기남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묻고자 합니다.

오늘 선관위 관계법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개특위가 시간에 쫓겨서 여유 있게, 한가롭게 계속해서 토론만 끌고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말씀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24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넘겨주지 않으면 전부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사퇴를 하면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금년 말까지 선거구제에 관한 규정을 다시 조정해서 개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그 주문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을 넘기게 되면 관계법 규정이 무효화가 되는데 무효화가 된 뒤에 그 법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효력이 상실된 법 규정을 이제는 개정이 아니라 새로 제정해야 될 입장에 놓여지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평행선을 달릴 수만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금 양해를 구할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KBS에서 전화인터뷰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가서 답변을 하고 들어와야 될 입장인니까 양해하시고 회의는 대신 간사님이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상 위원장, 李敬在 간사와 사회교대)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李敬在**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정배** 위원 이번에 우리가 선거법을 고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총선부터는 돈선거, 조직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자금을 둘러싸고 차떼기 등등의 범죄적 수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앞으로는 확실하게 돈선거, 조직선거를 할 수 없는, 불법자금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자금조차도 최소한도로 쓰면서 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돈선거, 조직선거,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일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위헌이다, 어떻다 하는데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를 수사기관으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행정기관으로서 불법선거,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또 불법·선거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도 조사권을 갖는 일, 그리고 그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말하자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계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조금도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소위에서 현 선거법에 있는

선관위의 단속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선관위 단속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 후 답례는 3개월 이내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현행 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답례 금지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왜 6개월이 됐느냐 하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날, 이를테면 7개월이 되는 날 답례를 했는데 그 답례는 이 답례 금지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범죄행위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한 달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 후 답례기간이 6개월로 한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10억 원을 누구에게 답례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안은 행위 시로부터 최소한 6개월간 공소시효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일단 선거법 위반시효를 현행처럼 선거일 후 6개월로 하되 선거일 후에 빚어지는 답례행위 같은 새로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공소시효를 만료하도록 하자고 하는 안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국민정개협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관해서 이 기간이 없다면 예를 들어 나중에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항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선거의 답례로 봐서 그 해당 정치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그 항응이 선거와 관련된 답례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행위인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관해서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현재가 결정한 대로 헌법불합치 상태를 교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이 문제를 늦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국회가 올 4월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빨리 각 당의 당론을 정하고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거의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 만료일을 열흘 앞두고 이제 와서 시간이 급하니까 오늘 당장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가 올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12월 31일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인구격차가 지금 3 대 1을 넘어서서 약 4 대 1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선거구에,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그 선거를 무효로 하지 않고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이 넘어가면 마치 지난번 총선에서 당선된 저를 포함한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늦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개혁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졸속으로 시간만 지켜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敬在 李方鎬 위원 말씀하세요.

○李方鎬 委員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서 완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당장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는 좀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다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급한 것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해결되어야 모든 문제가 순서대로 풀려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여야 각 당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리당략에 의해 무한정으로 끌고 나갈 때는 하나의 정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의회주의의 기본은 일단 최소한 토론을 하고 또 서로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다수결 처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아무튼 각 당이 처음에는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이 다른 그 당론을 3당이 합의해서 일단 소선거구제로 하고 인구 상하한선은 10만~30만으로 정하자, 그리고 지역구 의석은 245석으로 하되 단 전국구 의석은 추후 논의해서 합의하자, 이것이 3당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석의 20%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의석의 4분의 3이 되는 3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무한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의사일정 결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사항은 일단 소위에 넘기고 소위에서 합의되면 그 합의된 사항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안이든 소수안이든 거기서 표결처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분명히 신기남 위원이 참석했고 특히 4당 간사가 다 참석했습니다. 그때 신기남 위원님의 발언이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견을 붙여줄 테니 일단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라, 그 대신 우리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붙여 달라, 그러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3당이 조항별로 다수의견, 그리고 소수의견을 붙여서 한 조항씩 처리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3당 간사끼리 합의할 때도 일단 월요일까지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그 동안에 4당 지도부나 총무단회의에서도 타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면 그때 가서 표결처리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회의할 때는 합의해 주고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리거나 언론이 있

으면 파기를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하니 어떻게 앞으로 서로가 대화의 상대로서 협의해 나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급한 것은 선거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선거구 문제에 대해 3당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일단 표결처리를 하시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순서를 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敬在 다음 朴柱宣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柱宣 委員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李方鎬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조정돼서 오늘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극절이 있기는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해 법 논리상 수용과 수궁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만 개혁적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이 법치국가에서 헌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비개혁적인 목소리로 폄하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것이며 법치국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법안에 법의 집행관은 악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헌신 노력한 그 공적을 저희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현행 법 체계가 문제가 있고 또한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갖가지 정치개혁이 현실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과도한 권한의 집중이 과연 법치민주국가에서 옳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정치자금법을 논의하면서 선거와 관련해 제안한 내용의 99%를 수용했습니다.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또 모든 선거자금은 단일계좌를 통해서 수입·지출을 하도록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범위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기간제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실명법의 취지가 사문화되고 몰각될 것이 사실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사범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경찰에서도 단속하는데 같은 선거사범을 단속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의 눈에 띄면 법관의 통제에 의해, 다시 말하면 영장에 의해서 계좌추적이 가능하고 영장에 의해서 임의동행이 가능한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눈에 띄게 되면 그런 법적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맞는 것이냐, 위헌이 아니냐?

또 하나 자료제출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도록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논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100% 동의를 했습니다.

정당한 자기권한 행사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사하면 왜 범죄가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제시를 요구했을 때 헌법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만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범죄의 구성이 되어 버린다고 했을 때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문제는 행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는 제도이고 다른 유사 법규에도 인용되어 있고 세계 여러 나라 법제에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효율적인 범죄 감시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제도는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열린우리당 위원들을 제외한 전체 위원들의 의견으로 받아들

여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올렸던 것입니다.

또 아까 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위반했을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위원도 계셨는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면 무죄선고를 받지 않으면 모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몇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양형의 균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직권남용죄를 선거법에 규정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권한 약화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권한 약화 측면보다는 사기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당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형법상 일반 직권남용죄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오해를 받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위축시켜가면서까지 이 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 일반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로 가자고 주장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주장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개개 위원들의 견해와 달리 의결될 수도 있겠지만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 전부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아주 비개혁적이고 반개혁적인 내용인 것처럼 치부가 되는데 그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선거 당선 이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문제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자는 범개혁안이 제안되었는데 6개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답례적인 금품수수행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가 실시된 이후 6개월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대 총선에서 6개월 지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전선거운동 시점을 16대 끝나자마자 했다면 6개월 전에 했던 것은 6개월이 걸릴지 몰라도 6개월 넘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겠습니까?

명문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든지 부정한 답례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서 12월 31일 24시가 되면 대한민국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인구 3 대 1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일부 선거구에 대해 무효가 결정되었는데 하나의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전 선거구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선거구가 무효가 된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유효하게 해 주겠는데 12월 31일이 넘어가면 전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선거구가 없어져버리는 상상하지 못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모든 책임은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선거제도에 있어서 대선구, 중선거구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절대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인데다가 소선거구제를 확고부동의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고 또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다음에 범개혁에서 소선거구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무책임한 당론 고수를 위해서 모든 정치권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보다는 우리 당론을 일시 접는 다할지라도 소의를 접고 대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敬在 간사, 목요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라도 개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분은 가차 없이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聖順 위원 발언하시지요.

○金聖順 委員 저는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오늘 정개특이 처음 열리는 날 같습니다. 칠팔개월 해 왔다는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 할 겁니까?

그리고 마치 협의하고 합의해서 진행시키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 같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혁하는 사람 같고 심지어는 금년을 넘겨도 좋다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금년을 넘겨도 좋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 왔습니까?

너무 질질 끌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질질 끌어서 걱정인데 위원장님까지 질질 끌지 마십시오.

이렇게 수차 협의해서 선관위 내용까지 다 합의해서 수정의견이 오늘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위원장님이 발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견을 들었으면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야지 처음 정개특위하는 것이나 뭐가 다른니까? 24일로 넘길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협의하고 그다음에 표결하자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셔야지 또 연기합니까?

의견 수렴한 다음에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십시오.

○위원장 목요상 그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서 결론을 낸 의견을 확인·점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용을 담은 법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법 전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소위원회의 결과도 법조문에 반영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당장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기남 위원 처음에 얘기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나중에 얘기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 심의에서 매 항목마다 항상 소수안으로 물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 시점에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표결에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관되게 표결처리를 반대해 왔고 단지 지난 금요일에 당일 처리하는 것을 반대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열린우리당 위원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언론에서도 와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도 나와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셨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표결처리를 할까봐 걱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분들의 뜻을 대변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합의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표결처리한다고 하는 3당이 합의한 지역구의원 증원에 대해서 저희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한나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를 공전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목요상 지금 빗나가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론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신기남 위원 한나라당에서는 할 말 다 하고 왜 그러십니까? 할 말은 해야지요.

그렇게 공전시키다가 저번 금요일이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 첫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천정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입법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논리를 마음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연말이 지나면 선거구가 무효되어서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성급한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현재의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의 선거구로 당선된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16대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이 2000년 2월 11일에 이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말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되 표결처리해서는 안 되고 중의를 모아서 합의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표결처리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선거법을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더구나 지역구 의원 정수만 먼저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더 더욱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세워서 표결하려고 하는 선거법의 내용이 대단히 비개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선거법이 표결처리가 되면 냉엄한 국민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이 아주 컸습니다. 그 중에서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현재 있는 조항까지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다시 논의해서 일부 선관위의 건의를 수렴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렴한 내용은 전체 내용을 다 수렴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선거법 조항에 있었던 내용을 3당이 합의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선관위가 와서 '이것은 중전에도 있는 것이었으니까 환원해 주시오' 하고 요청한 것을 일부 받은 것뿐입니다.

그 외에 범개혁이나 저희 당이 주장했던 선관위의 권한강화안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비교표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권한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미흡한 채로 소위 다수안이라는 이름으로 잠정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현직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기간도 축소했고 선거연령도 20세를 유지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수안 내용이라는 것 중에서는 대폭 고쳐져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대 국회의 관행을 무시하고 또 내용도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선거법을 가지고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가능성이 없다면 각 당 원내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나서서 합의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오늘 대표들의 모임에서 정개특위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3당

만이 합의해서 표결처리할 내용이 아니고 좀더 국민여론을 모아서 개혁적인 안이 탄생되도록 더 심의를 하고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또 안 되는 것은 표결처리할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들 간의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관행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존경하는 신기남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괜히 대외적으로 잘못 알려지면 신기남 위원님의 주장만 옳은 얘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틀리는 얘기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지난 19일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아서 그날 처리하자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남 위원님께서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朴柱宣 위원, 신기남 위원, 金學元 위원, 李敬在 위원 오시라고 해서 ‘오늘은 분위기가 이러니까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절충을 시도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표결처리를 안 하되 22일까지 결론을 도출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22일 표결처리하는 데 동의하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안 했습니까? 동의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마치 동의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표결처리한다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직전에 내가 신기남 위원님을 복도에서 만나 가지고 ‘분위기를 보니까 열린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으로 반대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오늘 내로 표결처리를 안 하겠다. 그 대신에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드릴 테니 절충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까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신기남 위원은 내 말을 듣고 수첩에 다 적기까지 했으면서 본회의장에 나가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오늘 표결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오늘 처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 언제 어떤 방

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론에 따라서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처리를 안 하겠다고 미리 신기남 위원님에게 귀뜸을 해 드렸는데도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가지고 마치 내가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도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하고 신기남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금년 말까지 선거구역표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위헌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12월 31일을 도과한 경우에 관해서 어떤 효력이 있다고 현재에서 판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선거, 보궐선거 때문에 선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현재 판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에 관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지만 이 선거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선거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선거구역표 전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해야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위헌결정을 해 놓으면 선거구역표가 없어지는 공백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공백상태로 재선거, 보궐선거를 어떻게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설사 새로 개정을 빨리 해서 재선거,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사람의 선거구와 불균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도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선거구를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해 줄 테니 31일까지는 개정을 해라, 그리고 31일을 넘으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위헌이라고 것은 그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무효가 된다면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이냐에 관해서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의 자격도 문제가 된다고 논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을 넘기면 그런 논란거리가 되니까 왜 논란거리를 만드

느냐, 그 전에 빨리 선거구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얘기이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헌법 규정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4당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했지만 정치개혁특위를 2개월 연장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선거구제를 2개월 넘겨 가지고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구제는 어떻게든지 금년 말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들 사이에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선거구제 말고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다른 법 규정도 개정해야 되고 정치자금법도 개정할 거리가 많이 있고 또 정당법도 개정해야 될 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이것들을 금년 내에 다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테니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개혁특위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2개월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한 것이 선거구 확정하는 것을 2개월 연장해 준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거구 확정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원내총무들에 의해서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인 19일 4당 간사들이 모여 가지고 처음에는 이것을 다 공론에 부쳐서 토론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표결하든지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안 된다고 재차 논의가 되어서 4당 간사들이 다시 모여서 합의한 결과 신기남 간사께서 원내대표들에게 어떻게든지 가부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오늘 원내 대표회의를 하도록 놔두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가부간에 결론이 난 뒤에 여기 이 회의에서는 표결을 해도 좋다' 이렇게 4당 간사들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서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당의 원내대표들은 오늘 점심 먹으면서 국회의장하고 같이 토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들끼리 여기에서 논의해서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으니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 4당의 원내대표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4당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오늘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서 빨리

넘겨주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저도 선거구 확정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선거구 확정위원 중에 특히 민간인인 4명의 위원들이 아주 분개해 가지고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난 몇 달 동안 이것이 뭐냐? 정치개혁특위가 뭐하고 있느냐? 이렇다면 우리는 다 사표를 내고 그만 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표를 내도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뜯어말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간에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조금만 참아 주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까지 처리 안 하면 우리는 선거구 확정위원을 다 사퇴하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하면 위헌결정 문제도 12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선거구 확정위원들도 오늘 내일 처리 안 하면 사퇴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또 4당 간사들끼리 금요일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쯤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표결처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어도 내일은 표결해서 이것을 선거구 확정위원회에 무슨 수가 있더라도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위원장 **목요상** 박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가 정개특위 첫 날 회의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데에 대해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간 정개특위에서 수십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또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관한 소위 회의를 최소한 두 차례에서 다섯 차례 씩 열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수안도 내고 소수안은 소수안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전체회의에 넘겼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된 것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연말을 넘겨야 될지 정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3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구도 비슷하게 가고 있고 마치 3당은 개혁을 반대하고 열린우리당만 개혁적인 안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범국민정개협의 안 중에서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일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늘리는 것은 개혁이고 줄이는 것은 반개혁이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열린우리당은 범국민정개협에서 얘기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왜 반대하십니까? 소선거구제의 인구 상한·하한에 대한 현재 판결을 보면 10만 혹은 11만으로 하한만 정하면 이것은 바로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중선거구제를 운운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원 정수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넘기지 않고 연말을 넘기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인지……

정개특위가 특정 정파의 정치선전장 비슷하게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하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또 다수결원칙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열린우리당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내일이고 모레고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매일 나와서 이런 논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으로 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아주 무력함과 수치심까지 느낍니다.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정개특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정개특위 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全甲吉 위원님 말씀하세요.

○全甲吉 **위원** 全甲吉 위원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삼가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마는 생산적인 회의를 위한 의사진행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은 모두 다 한 분이 발언을 하면 거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 못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자기 주장을 최고의 진리인 양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안에는 음양이 있고 상반이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좀 취해 주시면 회의진행도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모든 사안이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정개특위 운영상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았을 때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한나라당한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어차피 한나라당 안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 본인은 한나라당 안도 좋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어차피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려야 하는 부류가 지금 있습니다.

저도 회의를 여러 차례 해 보지만 속 보이는 행동이나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토하고 싶은 심정도 있고 그래요. 개혁 개혁 하지만 누가 여기에서 개혁을 싫어합니까? 다 개혁을 선점하려고 그러지요. 속 보이는 행동은 그만하고 양심껏 합시다.

그리고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않았습시다만 그동안 표결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논의될 때는 표결을 안 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지금 국회 4분의 3, 80%에 가까운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왜 표결을 안 합니까, 해야지. 소수의견을 달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이니까 표결에 임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한테 밝히고 뽕뽕한 것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의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어떤 당에서는 의원들이 많이 와 있던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행사하고 막자는 것인지 몰라도 그동안 개혁하는 분들이, 날치기 통과하는 것 물리적으로 막는 것 싫다고 하신 분들이 인해전술을 동원해서 이 회의를 험악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많이 하고 싶지만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선거법이나 모든 것은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것만 논의해서 빨리 통과시켜 줘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위원장 **목요상** 정의화 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발언은 이 정도로 끝냅시다. 똑같

은 소리 자꾸 하셔야…… 하여간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정의화 위원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저는 지난 8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앞으로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갈 것인지 선거가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중대한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왜 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정 위원님이 안 받으셨지……

○정의화 위원 제 말씀은, 회의에 여기에서 그간에 합의된 것들 또 쟁점들 이런 것이 뭔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달랑 이것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것은 정 위원님이 모처럼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정의화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이 대비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님들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기본적인 자료는 항상 두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둘째는 지금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뭉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갑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늘 회의도 보면 애초에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제가 8년간 해 보면서도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지금 구획을 정하는 것하고 의원정수 문제가 굉장히 급하다면 이것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빨리 논의를 해서 표결을 하든 또는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하듯이 가급적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정 합의처리가 안 되면 그다음에는 표결밖에 방법이 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결론 내린 것을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하나하나하게 하지 마시고 결론이 난 것은 정리해 가면서 결론이 안 난 쟁점을 따로 그때그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회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4당 간사님 잠깐 오셔서 의논합니다.

○이규택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목요상 죄송합니다. 발언을 못 하신분의 발언하시고 싶은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발언하는 내용을 들으니깐, 아까 우리 손갑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또 우리 김聖順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회의운영 방법도 아닙니다.

끝까지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 다 반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의견만 쫓아가다가는……

○신기남 위원 저희가 언제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했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아니, 내일 합의도출을 해 달라고 하니깐 그것도 안 된다, 표결처리 해야 되겠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은 3당 간사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니까 표결처리는 안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상없어도 어떤 물리적 제지도 극복하고,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선거관계법 내용에 일부 불만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선거구제에 한정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정배 위원 선거구획정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다른 당에서 받아들이지 못 한다면 서로 절충해서 도농복합선거구제 같은 선거구제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민주당이나 자민련이 당초 당론인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지 않고 한나라당 안에 찬성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중대선거구제가 아니고 백보를 양보해서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 하더라도 지금 3당이 합의한 안은 대단히 잘못된 안입니다. 인구를 10~30만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을 243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될 이유가 없고, 국민들도 지금의 227석에서 더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만, 30만을 결정해 놓은 이것도 틀려요.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야 될 것은 우리 지역구 의석 수를 결정해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43석하고 10만, 30만이 대체로 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시는 많은 위원 중에는 일부 국민을 위해서 뭐가 정치개혁상 바람직한 선거제도이고 국회의원 정수냐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자기 지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정개특위에 보임시킨 각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을 10만으로 정해야만 내 선거구가 살아남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위원을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표결을 하고 합의를 해도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표결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고 다른 객관적인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들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사리사욕을 넘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개혁적인 견지에서 선거법이나 선거구획정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신뢰를 먼저 획득한 다음에 이 문제가 내일 논의되고 표결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내일까지 이 점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지금 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무슨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일곱 번째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까닭은, 정개특위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의견의 말씀인지 아니면 아예 이것을 무산시키고 제때 해결을 못 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방법인지 얼른 수궁이 안 됩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법원에서도 시기적으로 늦은 공격방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뒤늦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고, 내일 하여간 본회의 산회 후에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로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出席委員(19人)

강 봉 균	金 聖 順	金 容 鈞	김 택 기
金 學 元	목 요 상	박 종 희	朴 柱 宣
신 기 남	심 규 철	李 敬 在	이 규 택
李 方 鎬	全 甲 吉	전 재 희	정 의 화
천 정 배	咸 承 熙	黃 昌 柱	

○請暇委員(1人)

이 병 석

○委員아닌出席議員(4人)

김 근 태 송 영 길 이 부 영 이 중 길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李 昌 熙
전 문 위 원	安 秉 玉
입 법 심 의 관	李 秉 吉